



## 장애학생 지원 규정

규정 번호	2-5-21
제정 일자	2022. 8. 11.
개정 일자	2024.3.20.
책임부서/팀·계	입학학생처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신안산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”이라 한다)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학습 및 대학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규정에서 장애학생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재학생을 말한다.

**제3조(장애학생 신고)** 장애학생은 입학 직후 또는 장애인 등록증 발급 직후 소속 학과장에게 장애 등급과 장애 유형을 신고하여야 하며 재학 중 장애정도가 완화 및 심화되어 유형, 등급이 변동이 있는 경우 다음 학기 개강 전까지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.

**제4조(수강신청 및 학습지원)** 대학 및 학과에서는 장애학생 유형별 수강신청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여 학사관리 운영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며 학과에서 강의계획서, 학사지도, 평가(시험) 등과 관련된 적절한 학습 지원이 장애학생에게 제공 될 수 있도록 한다.

**제5조(장애학생 정보제공)** ① 장애학생의 교수·학습 지원을 위하여 장애학생이 수강하는 강좌의 교·강사에게 장애유형, 장애정도 등 관련 정보를 제공 할 수 있다.  
② 교수·학습 지원을 위하여 장애학생에 관한 정보를 교·강사에게 제공하는 경우 해당 학생의 사전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 해당 교·강사는 정보보호 의무를 숙지시켜야 한다.

**제6조(장애학생 도우미 운영)** 장애학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도우미를 운영 한다. 다만 도우미는 심한장애(1~3등급) 학생을 우선 배정하고 그 외 필요한 경우 심사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.

1. 학습보조 도우미
2. 이동보조 도우미
3. 도서관이용 도우미

**제7조(장학금 지급)** 장애학생에게는 별도의 장학금을 지급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장학 규정에 따른다.

**제8조(교육기자재 보유)** 장애학생의 학습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유형별 교육기자재를 보유 할 수 있다.

**제9조(편의시설)** 대학은 장애학생의 원활한 학내활동을 위하여 편의시설을 지원한다.

**제10조(장애학생 지원업무)** 장애학생지원을 위하여 입학학생처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 한다. <개정 2023.3.30., 2024.3.20.>

- 장애학생지원의 운영 및 계획에 관한 사항
- 장애학생지원의 예산·결산에 관한 사항
- 장애학생의 과목수강 및 학업 지원에 관한 사항
- 장애학생의 복지 및 편의시설에 관한 사항
- 장애학생 교내 이동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
- 장애학생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
- 교내 장애학생 차별 피해 사례 신고 접수 및 조치에 관한 사항
- 장애학생도우미 운영에 관한 사항
- 기타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사항

**제11조(보칙)**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.

#### 부 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2022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2023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2024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.